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나501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나501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가소1008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이재용(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변론종결 2024. 5. 28.

판결선고 2024. 6.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가소1008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성지호, 판사 김현미